

러시아 저널리스트의 법적 위상과 보호

선봉희

동서미디어 연구소장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행정학석사
-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법학부 교환석사
동 대학 언론학과 언론학 박사
- 저서 및 논문 : 『1991년 러시아 대중정보매체법의 의의와 러시아 미디어 모델』, 『러시아 언론과 명예와 권위의 보호에 관한 법안』 외 다수

1. 서문

러시아 연방 대중정보매체 활동의 법적 근거는 1991년에 채택된 「대중정보매체법」이다. 이 법을 기반으로 대중정보매체의 활동에 관한 규범적, 법적 특별조항들이 보충, 개정된 「광고법」,¹⁾ 「국영 대중정보매체를 통한 국가권력기관의 계몽절차에 관한 법」,²⁾ 「러시아 연방의 대중정보매체와 책 발행에 대한 국가지원법」³⁾ 등이 선포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중정보매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정법, 형법, 민법, 선거법, 관세법, 무역법 등과 그 하위법률들이 이미

제정되었거나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대중정보매체 관련법들은 러시아 시민의 법의식 성장과 인권의 준수, 국가조직의 개방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노력 등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러시아 사회가 시민 중심의 법적·사회적 구조로 변화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러시아 연방이 진보주의적, 민주주의적 사회로 탈바꿈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구(舊) 소련 시절, 정보의 기능은 '지도'와 '교육'에 있었고 정보 정책과 대중정보매체 기관들은 구(舊)소련 지도부의 지배를 받았다.⁴⁾ 이러한

1) О рекламе

2) О подяжке освещ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 ой информации

3)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книгоизд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4)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신문담당 책임자인 이반 스킨코브는 '정치 범주로서의 정보'라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소련 공산당 제24차 전당대회는 정보를 '지도를 위한 수단이며 교육과 통제를 위한 방편'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정보의 사회적 역할이 이 과학적인 정의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정보는 정보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 대한 그리고 그 의식의 형성에 관한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위한 체계의 구성요소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정보의 정치적인 기능은 대중정보매체의 인권침해를 방관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구(舊) 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1993년 러시아 연방 헌법에 '개인의 존엄은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고 그 어떤 것도 이를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갖는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또한 1998년 9월 25일, 하원의회 대표인 코브존(И·Кобзон)은 '국가와 사회에 의해 명예와 존엄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관한'⁵⁾ 연방법 기획안을 하원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그동안 정보의 정치적 기능의 도구로 활용됐던 대중정보매체 위상도 변화를 하게 됐다. 이제 대중정보매체는 피라미드형의 지배적 수직 조직구조의 정보전달에서 벗어나 선택적·수평적 정보의 전달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991년 제정된 「대중정보매체법」은 대중정보매체가 이러한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디어 사유화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대중정보매체의 탄생과 소멸이 거듭됐다.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인쇄매체수는 4만 6,000개로 늘었다. 방송매체의 경우 2002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면허증이 교부된 곳이 텔레비전 방송국이 1,276개, 라디오 방송국이 1,002개, 케이블 방송국이 258개, 위성방송국이 18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중정보매체법」에 의해 급속히 늘어난 대중정보매체의 활발한 활동과 성장은 러시아 연방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중정보매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신선하고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시민과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 정보를 받아

들이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널리스트는 바로 대중정보매체와 시민 또는 사회의 중간에 자리해 정보를 전달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저널리스트는 창조적인 작업과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저널리스트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저널리스트에게 창조적인 활동 및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조적인 작업과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는 저널리스트의 역할과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저널리스트의 권리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저널리스트들은 정보를 찾고, 받고, 유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저널리스트들은 전문적인 윤리법을 제정해 이들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전통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저널리스트들은 정보 취득에 있어서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저널리스트의 활동은 저널리스트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러시아 연방 대중정보매체법」의 5장을 만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논문에서는 '러시아 저널리스트의 법적 위상과 보호'라는 주제 하에 러시아 연방의 「대중정보매체법」 5장에 나타나 있는 저널리스트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러시아에 있어서 저널리스트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대중정보매체법」을 제외한 여타 연방법이나 하위법률과 충돌할 경우 그 법적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러시아에서 명예와 권위가 대중매체에 의해 훼손되었을 때 관련법은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등도 알아보고자 한다.

5) О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м праве на честь и достоинство и об обеспечении этого права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обществом

2. 「대중정보매체법」과 저널리스트의 권리와 의무

1) 저널리스트의 권리

「대중정보매체법」에서 말하는 저널리스트의 권리는 무엇보다도 정보를 찾고, 조사하고, 취득하며 유포하는 것이다. 「대중매체정보법」에 제시된 저널리스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과 조직, 기업과 단체, 사회단체기관 또는 대(對) 언론서비스기관 방문.
2. 국가와 전문적인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비밀을 내포하고 있는 기록과 자료에 대한 접근.
3. 현 법42조 1항의 내용
 - (1) 편집국은 저작권, 출판권과 지적재산의 여러 권리를 포함해 이용된 작품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작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저작자 등이 작품을 이용하는 조건과 성격에 대해 편집국과 조약을 맺었다는 전제 하에 저널리스트들은 각종 기록과 자료들을 복사하고 출판하고, 방송하고 재생산
 - (2) 법으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오디오, 비디오, 영화와 사진을 이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 자료의 복사
 - (3) 특별하게 법으로 보호되거나 응급상황으로 선포된 자연재난 현장, 사건 현장, 대중집회 장소 방문
 - (4) 개인적인 서명 아래 자신이 작성한 기사와 자료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과 평가 발표
 - (5) 자신의 신념과 상반된 보도 또는 자료에 대한 서명 거부

- (6) 편집 과정에서 왜곡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도 또는 자료에 자신의 서명 제거
- (7) 주어진 보도 자료를 이용하는 조건과 성격에 대한 통제 권한
- (8) 익명이나 서명없이 준비된 보도와 자료 배포

2) 저널리스트의 의무

러시아 저널리스트들은 그의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명예, 권위, 건강과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정부로부터 삶과 자산을 보호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저널리스트들은 전문적인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법과 시민, 조직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대중정보매체법」이 규정한 저널리스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노동관계에서 형성된 편집국과의 조약을 준수
2. 자신이 보도한 정보의 가치를 증명
3. 비밀정보의 내용과 출처 보호
4. 진술의 보도를 허용한 취재원의 요청 수용
5. 사회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으로 정해진 사람의 개인적 사생활에 대한 보도 시 동의 확보
6. 시민이나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이를 오디오와 비디오, 영화나 사진으로 만들 경우 통보 의무
7. 준비된 보도나 자료에 대한 유포와 관련해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주 편집인에게 통보
8. 법을 위반하는 것과 관련된 취재나 보도를 해야 할 경우, 편집인의 요구와 해당 취재 지시 거절
9. 저널리스트의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제출

3. 다른 연방법 및 하위법률과 연계된 저널리스트의 법적 위상

1) 국가 비밀에 관한 법

「대중정보매체법」 제47조의 1항을 보면 저널리스트의 권리를 '정보를 찾고, 묻고, 받고, 유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9조 4항에서도 '모든 사람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보를 탐지, 입수, 전달, 출간, 보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국가의 비밀에 관한 보도는 법으로 제한되며 이를 대중정보매체가 공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1997년 3월 6일에 선포된 대통령령 No188에는 몇몇 사안에 대한 보도금지 목록이 정해져 있다. 그에 따르면, 첫째, 연방법이 허가하는 보도들을 제외하고 저널리스트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취재대상의 신상명세와 기타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셋째, 공무상의 비밀을 형성하고 있는 보도, 넷째, 의료, 공중, 변호비밀, 편지의 비밀, 전화통화, 우편발송, 전보와 기타 통신 등의 민감한 내용, 다섯째, 상업적으로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는 정보, 여섯째, 아직 공표되지 않은 기술의 세부 내용이나 발명의 핵심 사항 등에 관한 정보 등이 그것이다.

또 1993년 7월 21일에 선포된 No5485-1과 1997년 10월 6일에 수정된 No131- Φ 3의 '국가비밀에 대한 연방법'의 5조와 7조에도 '국가비밀을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이 명시되어 있다. 이 법 5조에 따르면, 국가비밀을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으로는 첫째, 군사 사항에 대한 것 둘째, 경제와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 셋째, 국내 정치와 경제 분야에 대한 정보 등이

예를 들면, 군부대의 위치와 인원, 부대 이동 등의 정보는 대중정보매체를 통해 공표하는 것이 금지되

어 있다. 이에 관한 정보는 군부대 지휘관, 기관 책임자 등의 허가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들을 법으로 규정해 특별하게 보호하는 것은 대중정보매체를 통해 보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관련 정보의 보도에 관한 편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만약 대중정보매체를 통해 국가의 비밀이 보도될 경우 해당 대중정보매체의 활동이 금지되고 관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관한 사례가 1998년 12월 『에카제리나에서 온 베체르니 베도모스티』라는 신문에서 일어났다. 우랄 지역의 전투책임자가 '러시아 연방 국가 인쇄매체 우랄지역 운영국'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에카제리나에서 온 베체르니 베도모스티』지가 입수해 신문에 게재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랄 지역 부대의 이동 등에 관한 군사 기밀이었다. 이 보도로 『에카제리나에서 온 베체르니 베도모스티』지와 보도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한편, 사적인 비밀 또는 영업상의 비밀 등에 관한 정보 역시 보도를 금지하는 몇몇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저널리스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비밀을 손에 넣거나 함부로 유포하고 이를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형법 137조, 183조).

1993년 7월 21일에 제정된 '국가의 비밀에 대한' 7조 역시 보도에 있어 비밀에 부쳐야 하는 정보들의 목록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첫째, 특수한 사건과 재앙,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보, 둘째, 보건, 위생, 인구통계학적 정보, 범죄의 구체적 묘사 등에 관한 정보, 셋째, 금 비축량과 정부의 외화비축에 대한 정보, 넷째, 국가의 고급공무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 다섯째, 국가권력기관과 해당 공무원의 법 위반 사실 등에 관한 정보 등이 보도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94년 11월 3일에 제정된 연방법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알려서 안 되는 정보는 행정권력기관의 구조, 기능과 활동의 형태, 주소에 대한 서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 연방의 '국가의 비밀에 대한' 5조와 7조의 조항들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원자로의 에너지와 관련된 보도의 경우 국가 이익 방어차원에서 보도가 제한되는 기밀을 적용받지만⁶⁾(5조 1항) 원자로와 연결된 배의 파손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될 경우 이를 보도하는 것은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구(舊) 소련 시절과 달리 오늘날 러시아는 특별한 사건이나 재앙 또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의 은닉과 왜곡은 형법상으로 처벌을 받도록 법규화하였다(형법 제237조).

또한 정보접근권을 보호하는 법인 '정보, 정보화, 정보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24조는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접근의 제한 및 이를 어겼을 경우 공소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방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소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 기밀에 대한' 7조항의 2번째 부분, 즉 국가 비밀을 형성하고 있는 보도에 대해 공무원의 동의 하에 '보도를 비밀에 부치는 것'을 결정할 경우 국가와 시민의 물질적이고 도덕적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며 형법적이고 행정적인 책임까지도 지게 된다.

현재 러시아는 정보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입법체제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첫 번째 제도는 1993년 12월 31일에 제정된 № 2334의 「정보에 대한 시민의 보조적인 권리의 보장」⁷⁾이다. 이 조

항은 '정보의 개방성 원칙'을 도입·실현한 것으로 시민의 정보접근과 제한된 공공이익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정부체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기관의 활동을 통제하는 대신 시민이 이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법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1995년 2월 20일 '정보, 정보화,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의 법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 법은 정보의 창조, 수집, 정제, 축적, 저장, 유포 등에 관한 일반인의 기록화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주 골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자산적인 정보를 형성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기록은 국가의 기밀 또는 기밀에 부치는 정보와는 구분된다.

한편 이 법 10조 3항은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정부의 권력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시민의 권리, 자유와 의무,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항들과 이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들 둘째, 특수한 상황 즉 경제적, 기상학적, 사회통계학적, 위생보건상 병리학적인 기록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들, 총체적으로 시민과 주민의 위험을 만들어내는 대상에 관한 기록들, 주거기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다른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들, 셋째, 국가권력기관의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의 이용에 관한 것, 다른 국가와 다른 지역의 자산에 관한 것, 경제현황에 관한 것, 주민의 필요성에 대한 것, 보도를 배제하기 위해 국가기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록들, 넷째, 도서와 고문 관련 개방적인 기록들을 다루고 있는 기록들, 국가권력기관, 지방자

6) 물리시설 등 특별시설 설립 등에 관한 보도일 경우 비밀로 부쳐진다.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 직후 소련 정부가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7)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гарантиях права граждан на информацию"

치단체, 공공단체의 정보체제 및 조직화 등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회의 관심을 제안하고 있는 기록들, 시민의 권리, 자유와 필요의 실현화를 위해 필연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기록들이 그것이다.

위 보도 목록의 위상은 국가 비밀 내지는 부차적인 무엇인가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보 보호에 대한 입법체계라는 것이 은밀한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 보도목록은 현재는 국가비밀법에 준하여 이용되어진다.

2) 영업상 비밀에 관한 법

대중정보매체와 관련한 비밀 중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영업상의 비밀'이다. 정보에 대한 영업상의 비밀이란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러시아 연방민법 139조 1항에 명시된 정보의 개념을 소개하면 '첫째, 정보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둘째, 법적 기반을 둔 정보의 접근은 자유롭지 못하며 셋째, 정보소유자는 그 은밀성을 정책적으로 보호 받는다' 라고 되어 있다.

상업적인 비밀을 형성할 수 없는 보도는 법조항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1991년 12월 제정된 구(舊) 소련의 정부령이다. 이 조항 № 35, 즉 '상업적 비밀을 형성할 수 없는 목록'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호하고 통제하는 기관과 사유화 과정에서 남용을 예방하는 국가의 조세서비스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조항들은 상업적인 비밀을 형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특히 설립에 관한 기록과 법령들, 기록화 된 증서와 면허들, 지불능력과 관련된 기록들, 임금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보도들, 자유로운 노동 시장, 환경오염, 반독점적인 입법체제의 붕괴, 정책담당 공무원의 참여, 기업가의

활동은 상업적 비밀을 형성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업적인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연방민법 139조의 2항에는 비합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갚을 의무를 지우게 하고 있다. 정보를 받을 때 저널리스트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상업적인 비밀을 형성하고 있는 보도를 누설한 것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한편 러시아 연방민법 139조에는 숙시된 상업적인 비밀과 관련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차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공표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 숙시된 상업적인 정보와 관련한 상업적 가치, 3자의 비유명성, 비밀보호정책의 이해와 관련해 법의 범위 내에서 열거된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법의 보호를 받는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3) 보도와 명예훼손⁸⁾

'보도'라는 개념은 '행위, 행동, 진술, 그리고 부정적 평가 상황에 대한 사실적 통지'로 이해된다. '보도'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1995년 9월 27일 러시아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던 코지레브(Козырева)의 '민사소송 심의 채택에 대한 거부'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이 사건은 1994년 5월에 지리노브스키(Жриновский)가 엔테베와 코지레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비롯됐다. 지리노브스키는 엔테베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러시아 민법 제7조 1부를 근거로 해당 매체에 대해 반박보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코지레브는 러시아

8) 언론중재, 2003 여름호 참조

연방 민법 제7조(새로운 러시아 연방 민법 제152조)가 자유로운 생각과 언어를 표현하고 확신하는 것을 보장하는 러시아 헌법 제29조의 1부, 3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코지레브는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이 러시아 연방 헌법 제29조가 수호하는 '사상과 언어의 자유', '의견과 신념의 자유'를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러시아 연방 법정에 청원하였다.

이에 러시아 법원은 한편으로는 명예와 권위의 보호를,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인 권리를 이용하여, 의무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정당하며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명예와 권위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아래, 그러한 정치적 평가 사실에 관한 반박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한정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편 보도는 그 자체의 평가적인 활동을 고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도가 사실이나를 고찰해야 한다. 예를 들면, 1993년 모스크바시의 제르진스키(Держинский) 구역의 법정에서 슈멘코(Шүменко В. Ф)의 일간신문 『덴』(День)을 상대로 심사됐던 사건에서 법원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반박해야 함에도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덴』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⁹⁾

4. 결 어

이 논문은 러시아 『대중정보매체법』에 명시된 저널리스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 비밀의 보도 제한과 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저널리스트와 관련된 각종 법에서 말하는 저널리스트의 위상은 헌법 21조와 29조 그리고 『대중정보매체법』에 언급되어 있듯이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에 대한 입법체제가 발전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연방적인 조항과 지역법적인 조항들 내에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 보장은 곧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내는 초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낱말이 발전하는 대중정보매체 환경과 조직들은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국가가 정한 비밀을 대중정보매체를 통해 보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도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바로 저널리스트이라고 할 수 있다.

저널리스트들이 성, 나이, 인종, 국적, 언어, 종교, 직업, 거주지 그리고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시민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산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다. 저널리스트와 정보원의 관계에서 정보는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 한낱 휴지조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겐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저널리스트는 정보 접근의 반향을 고려해 다음의 기본적인 4가지 경우를 숙고해야 한다.

9) 일간신문 『덴』은 '타블로'라는 제목으로 1993년 8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했다. "...물론, 형사범인 슈멘코에게 감옥의 인민재판소를 알려준다는 상상은 웃을 수 없는 노릇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슈멘코는 그 자신과 관련이 있는 체르노미르딘을 매우 잘 알고 있다. ..." 그러나 이 보도는 1. 슈멘코는 체르노미르딘에 대한 명예훼손을 수집한 적이 없고 2. 슈멘코는 그에 관한 범죄판결이 없으므로 형사범이 아니며 3. 슈멘코는 전략적인 진영을 이용하지 않으며 또한 교활한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으며 4. 슈멘코는 성격적으로 건달인 체르노미르딘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며 5. 슈멘코는 어느 누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돼 법원은 일간신문 『덴』의 재산을 차압하였다. 당시 『덴』은 '작가의 발행-저술 연합' 법인 공동소유였는데 러시아 연방법 제56조에 따르면 '대중정보 매체에 대한' 법령 위반의 책임은 설립자, 조직, 발행자, 유포자, 정부기관, 조직, 설립기관 등에 지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를 근거로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보도에 대한 반박문 게재의 의무를 신문사에 그리고 작가의 발행-저술 연합에게는 도덕적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지웠다.

첫째, 정보의 허락이다. 기관, 조직과 연합한 단체, 그리고 대리인들, 언론종사자들과 그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대리인 등에게는 정보 조회를 허락하여야 한다.

둘째, 허락된 정보의 거절이다. 만일 조회하고자 하는 정보가 정부나 상업적 또는 특별법으로 보호를 받는 비밀을 형성하는 보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거절의 통보는 정보이용에 대한 서면질의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안에 의장에게 전한다. 통지시 허가했던 정보가 특별하게 법으로 보호를 받는, 비밀을 형성하고 있는 보도와의 연관성을 들어 거절 이유를 충분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문서에는 거절 결정을 수용하는 공무원의 서명 확인과 날짜가 기록되어야 한다. 이때 서명은 정보접근관련 권리를 부여 받은 신청인이 해야 한다.

셋째, 정보의 허락을 유예하는 것이다. 만일 접근을 허가했던 보도가 서면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제시될 수 없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넷째, 조회의 상실,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 통지의 서명이 대리인이 아닌 것, 신청서 상의 문의된 정보를 몰래 바꾸는 것 등 지연행위를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대중정보매체를 통한 규범적인 보도를 위한 것이고 이는 대중정보매체법 제 61조에 기반을 둘 뿐 만 아니라 '정보, 정보화, 정보보호법에 대한' 연방법 제24조에 근거를 하고 있다.

개방사회와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러시아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자유롭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만일 불법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법의 심판을 받는다. 러시아 저널리스트도 마찬가지다. 비록 이들이 법에 의해 그 권리를 보장받고는 있지만 공익에 어긋나거나 인권을 침해할 경우까지 그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저널리스트들은 그들이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승대(1998). 『러시아 헌법론』. 서울: 법문사. p. 286.
- 선봉희(1995). 러시아 정보사회 기반형성을 위한 법안. 2005년 춘계언론학회
- 선봉희(1995). 러시아 대중매체와 저작권. 언론재단. pp.181~204
- 선봉희(2003, 여름). 러시아 언론법제의 현주소. 「언론중재」. p. 50~63.
- 파울로트(1984). 『소련의 보도기관과 정보정책』. 서울: 정음사. p. 327.
- Винокурова ГВ, Рихтера АГ, Чернышова ВВ (1997), Защита чести и достоинства. Теоретические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М:Шаг, 172 с.**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Закон РФ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айне"**
- Закон РФ "О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ихтера АГ(1996), Свобода информации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журналистов.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М:Факультет журналистики МГУ**
- Рихтер АГ(1999), Анализ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РФ в контексте права человека на информацию. ЗиП, Вып.17 с. 543**
- Федотова МА(1999),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Право и СМИ Вып.19**